

聯結財務諸表에 對한 小考

辛 貴 喆

A Study on Consolidated Statements

目 次

- | | |
|-----------------|---------------------------|
| I. 序 論 | 1. 企業集團의 把握과 利害關係者에게 情報提供 |
| II. 聯結財務諸表의 生成 | 2. 監査의 實効性確保 |
| III. 聯結의 範圍 | 3. 課稅의 適正化 |
| IV. 聯結財務諸表의 必要性 | V. 結 論 |

ABSTRACT

The results of management and financial status of business groups are represented properly by consolidated statements.

Consolidated statements are necessary for the interested parties to give the information about business groups and necessary not only for securing virtual efficiency but also for appropriate taxation.

I. 序 論

1976年 7月 22日 財務部告示第 712號로서 財務諸表規則의 改正을 보았다. 이에 新設된 聯結財務諸表에 있어서는 1976年 1年 1日 以後에 開始되는 會計年度부터는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와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¹⁾

聯結財務諸表의 制度는 美國의 聯結納稅制度의 採用에서 始作된 것이며 이 制度가 導入된 背景은 企業의 集團化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企業集團의 各構成會社는 獨自의인 立場에서 會計組織과 經營을 함으로써 支配會社의 經營陣이 從屬會社의 運營管理를 위하여는 各

1) 財務諸表規則 附則適用例

의 別個會計報告書로서 從屬會社들의 業績을 檢討하여 集團全體의 業績을 檢討하게 되므로 從屬會社 個個의 財務諸表만으로서는 密接不可分의 利害關係를 가지는 企業集團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를 把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을 單一組織體로 보고 集團화된 會計의 財務諸表를 結合한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聯結財務諸表는 企業集團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를 適正하게 表現하는 것으로서 企業集團의 把握과 利害關係者에게 情報을 提供하며 監査의 實効性を 確保하며 課稅의 適正化를 期하고 또 한 支配會社 經營者에게 經營管理上의 情報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必要한 것이다.

Ⅰ. 聯結財務諸表의 生成

資本主義社會의 企業은 自由競爭을 基盤으로 하여 發展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19世紀末葉 產業革命에 依한 高度機械 文明의 出現과 過度한 自由競爭은 弱肉強食의 狀態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企業家들은 基本的으로 競爭을 是認하면서 企業間의 相互利益擁護를 위해 企業防衛策을 講究하게 되었다. 이렇게 登場한 것이 Trust Konzern, Cartel 등의 企業結合 形態이다.

美國의 경우 1882年の 恐慌後의 80年代는 美國資本主義史上 最大로 繁榮한 時代라고 한다.²⁾ 即 激烈化한 競爭中에서도 資本蓄積의 增進傾向이 強하였던 것인데 當時 經營者의 念頭に 恒時 잊어지지 않지 않은 것은 恐慌의 教訓이라고 생각한다. 資本主義의 生産의 增大는 需給의 不均衡 經濟의 不況招來라는 惡循環을 回避하기 위해 供給者側에서 供給의 規制, 競爭企業間의 價格維持, 販賣地域의 割當等 企業間의 組織의 共同運營의 必要性을 가지게 되었다.³⁾

그러나 1888년까지는 美國各州의 法規는 Trust化를 許容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므로 各競爭企業은 相互共通計劃을 協定한다든지 또는 契約形式으로 Trust의 實質的 效果를 期待하고자 하였다.⁴⁾ 이와 같은 競爭企業間의 價格維持策은 必然的으로 不當한 價格形成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弊端으로 因하여 1890년에 Trust 禁止法인 全文 8條로 構成된 法律인 Sherman Act가 發布되어 不當한 價格形成을 禁止하고 Trust 또는 其他의 形態인 一切의 契約, 聯合, 또는 秘密合作은 違法으로 取扱하였다.⁵⁾

Sherman Act의 適用에 따라 1892년에 “오하이오” 州裁判所에서 Standard Oil Company가 違法會社로서 解散을 命한 事實이 있다.⁶⁾

Moonitz 教授에 의하면 Sherman Act를 契機로 持株會社가 輩出하였다.⁷⁾고 한다.

Sherman Act가 持株會社를 出現하게 한것은 1888년까지는 各州는 Trust化를 法規로서 禁止하였으므로 1888년부터 1893年間に “뉴저지” 州의 會社法이 改正되었다. 그 內容은 ① 어느 會社

2) 神野璋一郎, 宇治田富造: アメリカ 資本主義の生成と發展, 141頁

3) H. Heitman; A Cours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gher Accounting, 1910. pp. 156-158,

4) ibid, p. 159.

5) Watlton Seymour; “Consolidated Statements”,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18. p. 225.

6) 神野璋一郎, 宇治舊富造, 前掲書 144. 頁.

7) Maurice Moonitz; The Entity Theory of Consolidated Statements, 1951. p. 6.

가 다른 會社의 財産을 모두 購入할 수 있게 하였다 ② 他社의 株式과 社債의 所有, 處分이 可能하며 ③ 議決權을 包含한 所有主의 權利行使를 할 수 있게 하였다.⁸⁾ 이와같은 “뉴저지”州의 會社法改正과 더불어 Sherman Act 自體의 解釋도 競爭企業間에 不當한 價格形成은 禁止하였으나 他社의 株式을 購入하여 그會社를 支配하는 것은 可能하게 하는 氣運이 一般化하여 나타난 것이 持株會社인 것이다.⁹⁾

美國의 聯結財務諸表制度의 導入背景은 前述한 企業集團化의 前進이라고 생각한다. 企業集團 各構成會社는 各各 別途로 運營되며 또한 各者의 會計組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支配會社의 經營陣은 各構成會社의 管理運營을 위해 各各의 會計報告를 要求하게 되며 그리하여 各個 別會社의 業績을 檢討하여 集團全體의 現況把握, 業績의 檢討가 必要하므로 個個의 個別財務諸表만으로서는 그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므로 이에서 密接不可分의 利害關係를 가지는 企業集團의 個個의 財務諸表를 結合한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이 必要하게끔 되었다.

聯結財務諸表과 함은 1個의 統一된 經營意思로서 活動하는 企業集團을 單一組織體로 보고 그 企業集團에 屬하는 個個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聯結하여 單一의 組織體로서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나타내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財務諸表를 말한다.¹⁰⁾

聯結財務諸表의 制度는 1917年 以來 美國의 聯結納稅制度 採用을 發端으로 1933年 證券法, 1934年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法上의 公開制度의 一環으로 定着한 것이 最初이며 그 다음이 英國으로서 1947年 會社法의 改正에 따라 이 制度를 實施하였고 獨逸은 1965年 株式法改正에 따라 이 制度를 實施하였다.¹¹⁾ 그리고 日本은 1975年 6月 24日 企業會計審議會가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여 「連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關한 意見書」를 答申하였다. 이에 의하면 1977年 4月 1日 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는 聯結財務諸表를 提出하도록 하고 있다.¹²⁾

우리 나라는 1976年 7月 22日 財務部告示 第712號로 改正된 財務諸表規則을 發表하였다. 改正된 規則에 있어서 主要한 한 가지는 財務諸表의 範圍를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및 附屬明細書로 하며 剩餘金計算書가 基本的인 財務諸表에서 除外되고 資金運用表와 未處分利益剩餘金明細書를 財務諸表의 附屬明細書로 追加하고 支配會社의 경우는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制度는 1976年 1月 1日 以後 開始되는 會計年度부터 實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美國의 경우는 原則적으로 公開書類로서 聯結財務諸表만 提出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韓國, 英國, 獨逸의 경우는 企業集團에 있어서 支配會社는 支配會社의 個別財務諸表 以外에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와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¹³⁾

8) H. Heitman: op. cit, pp. 158-159.

9) 神野璋 一郎, 宇治田富造, 前掲書, 144頁에 의하면 株式을 自己支配下에 둔다는 것은 企業合同을 一層 強化하여 또한 一層 獨占的인 것으로서 Trust 禁止法을 死文化된 것이라고 한다.

10) 居林次雄: 連結財務諸表, 1976. 9頁.

11) 黑澤清, 「連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關する 意見書의 公表에 あたり」企業會計 27卷10號 2-4頁

12) 久保田音二郎「監査役の展開」企業會計, 27卷110號 8-9 頁

13) 黑澤清, 「連結財務諸表原則總論」企業會計 27卷10號 7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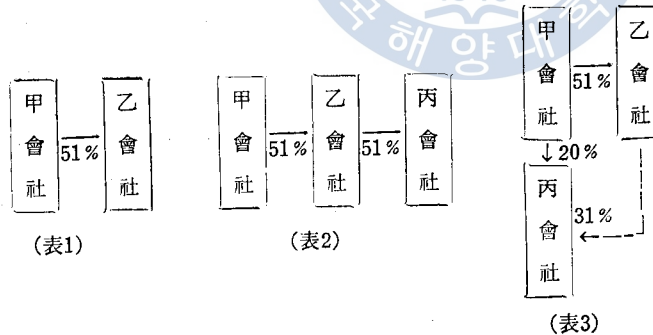
Ⅲ. 聯結의 範圍

聯結財務諸表는 企業集團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를 適正하게 表現하여야 하므로 聯結財務諸表에 聯結되는 會社를 正確하게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重要한 從屬會社를 脫漏한다면 聯結財務諸表는 企業集團의 實體보다 좁은 範圍를 나타내며 不充分한 것이 되며 또는 企業集團에 屬하지 아니 하는 것을 混入하면 企業集團의 實體보다 넓은 範圍를 나타낸다. 이와같이 聯結의 範圍가 實體보다 좁다든지 또는 넓은 경우 聯結基準과 聯結手續이 正確하게 지켜져도 그 聯結財務諸表는 妥當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聯結의 範圍를 正確하게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된 財務諸表規則에 의하면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와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 支配會社라 함은 他會社의 發行議決權株 過半數를 實質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會社를 말하며, 從屬會社는 所有되어 있는 會社를 말한다.¹⁴⁾

「議決權株의 過半數所有」를 聯結範圍判定基準으로 表示하고 「議決權의 過半數」라는 表現은 하지 아니하였다. 議決權株의 過半數所有라는 表現은 從屬會社가 株式會社에 限定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聯結範圍基準을 株式의 直接所有뿐만 아니라 間接 所有의 경우도 包含시키고 있다. 即, ① 甲會社가 乙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議決權株 過半數의 株式를 所有하는 경우(表1), ② 甲會社가 乙會社의 發行總數의 議決權株 過半數의 株式를 所有하고 乙會社가 丙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議決權株 過半數를 所有하는 경우(表2)와, ③ 甲會社가 乙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議決權株 過半數의 株式를 所有하고 甲會社 및 乙會社가 丙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議決權株 各 各 20/100以上の 株式를 所有함으로써 甲會社 및 乙會社가 丙會社에 대하여 發行株式總數의 議決權株 過半數의 株式를 所有하는 경우(表3) 聯結의 範圍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한 支配會社 또는 從屬會社가 위 表1. 2. 3. 과 同一한 方法으로 株式를 所有함으로써 支配會社가 또 다른 會社를 支配하는 경우에도 그 또 다른 會社에 대하여도 이를 從屬會社로 取扱하고 있다.¹⁵⁾

財務諸表規則第78條에서는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로서

- ①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開始의 決定이 있는 경우
- ② 清算 중이거나 破産宣告가 있는 경우

14) 財務諸表規則 第77條參照.

15) 稱垣富士男, 連結財務諸表詳解, 1976. 39頁

16) 財務諸表規則 第77條第2項.

- ③ 外國에 있는 會社로서 그 所在國의 法令에 의하여 資金移動에 制限을 받는 경우
- ④ 戰爭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가 發生한 경우
- ⑤ 그 會社의 資產總額이 支配會社의 資產總額의 5/100以下 이고 支配會社와 一般의 商去來가 없는 경우 등을 列舉하고 있다.

第1. 整理會社는 支配會社의 有效한 統制下에 있지 않는 狀態가 된 從屬會社가 法律的으로 從屬會社의 資格을 喪失한 것이며 一企業集團의 構成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聯結의 對象에서 除外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第2. 清算會社, 破産會社 등은 從屬會社의 資格을 喪失하지는 아니 하나 繼續企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聯結의 對象에서 除外된 것이라고 본다.

第3. 在外從屬會社에서 送金이 自由롭지 못하고 從屬會社가 充分한 活動이 阻止되고 있을 때 在外從屬會社는 聯結에서 除外되고 있다. 國際會計基準에도 「資金의 移動에 關하여 嚴格한 長期의 制限에 의하여 從屬會社의 資產 및 營業에 對하여 支配會社의 支配가 阻害되고 있는 狀態의 從屬會社가 經營되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從屬會社는 聯結에서 除外한략.」¹⁷⁾라고 規定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從屬會社의 營業種類가 支配會社와 顯著하게 相違하는 경우에는 當該從屬會社는 聯結에서 除外하고 있다.¹⁸⁾ 그러나 今般改正는 財務諸表規則에서는 이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Ⅳ. 聯結財務諸表의 必要性

聯結財務諸表는 經濟的으로 單一의 組織體인 企業集團이 存在하는 경우 作成되는 것으로서 이의 必要性에 對하여 「聯結財務諸表는 支配從屬關係에 있는 둘以上の 會社인 企業集團을 單一의 組織體로 보고 支配會社가 當該企業集團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總合的으로 報告하기 위해 作成하는 것이다.」¹⁹⁾라고 하다. 이때 「經營成績을 總合的으로 報告한다.」라고 하는 必要性은 個別財務諸表로서는 聯結會社를 通하여 利益操作이 可能하기 때문에 經營成績을 總合的으로 報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例로서 甲會社를 支配會社라 하고 乙丙會社를 從屬會社라고 假定한 경우 甲會社는 乙會社에 商品을 販賣하고 乙會社는 同商品을 丙會社에 販賣하여 甲, 乙各會社가 販賣하여 利益을 獲得하였다면 두 會社는 個別財務諸表上에는 當該販賣에 따르는 利益이 計上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丙會社가 同商品을 利益을 附加하여 外部에 轉賣하였다면 問題가 아니나 販賣하지 않고 保有하고 있다든지 또는 乙會社부터의 購入價額 以下로 다른 곳에 轉賣할 경우 甲, 乙會社가 計上한 利益의 信憑性은 疑問視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로서 各會社의 個別財務諸表만으로서는 經營成績을 알 수 없으며 聯結을 함으로써 企業集團의 正確한 經營成績을 判明할 수 있는 것이다.

「財政狀態를 總合的으로 報告한다」는 必要性을 살펴 본다면 支配會社는 通常從屬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므로 支配會社의 貸借對照表上에 다른 資產과 같이 從屬會社投資計定도 表現된다. 이

17) 國際會計基準公開草案第3號

18) 香場嘉一郎, 「連結の 一般基準及で 基準原則」企業會計 27卷10號 14頁.

19) 連結財務諸表原則 「第一連結財務諸表의 目的」

資한 것은 投資原價로서 個別貸借對照表에 計上하므로 投資處의 財政狀態가 顯著하게 惡化된다든지 또는 從屬會社의 經營成績이 急上昇한다면 投資의 評價額은 投資處의 實價가 反映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聯結財務諸表을 作成한다면 缺陷은 自動的으로 修正될 수 있을 것이다. 卽 個別財務諸表에는 漠然한 狀況判斷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聯結財務諸表에 의하면 企業集團의 把握이 보다 正確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株主 債權者 投資家 등이 支配會社만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를 把握코저 할 때, 支配會社의 個別財務諸表로서는 不充分하며 企業集團에 屬하는 從屬會社群을 包含시킨 形態에서 支配會社의 實體를 把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²³⁾

支配會社의 經營者의 경우도 企業集團의 實體를 把握하므로 今後의 經營에 支障이 없게끔 措置할 수도 있다. 그러나 經營者의 경우는 部下를 通하여 從屬會社의 必要한 關係情報를 入手하여 이를 基礎로 하여 支配會社의 經營에 萬全을 期할 수도 있다. 그러나 經營者以外的 利害關係者는 經營者와 같이 必要한 情報를 從屬會社를 通하여 簡單하게 入手할 수 없으므로 企業集團의 實體把握을 위하여 聯結財務諸表가 必要한 것이다.

2. 監査의 實效性 確保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의 必要性은 企業集團의 實體를 正確하게 把握한다는 것이나 作成된 聯結財務諸表가 適法이나 하는 것은 監査에 의하여 保證되어야 한다.

支配會社의 財務諸表를 監事, 公認會計士 등의 監査人이 監査를 할 때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對하여 製品을 賣買한 事實을 決算書에 表示되어 있다면 그 賣買에 對하여 多小의 疑問이 있어도 支配會社의 監査人인 以上 支配會社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가 適法的으로 表示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므로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導入하게 된다면 以上の 問題點을 解決할 수 가 있는 것이다. 卽 個別財務諸表는 支配, 從屬會社間의 賣買額을 表示하나 聯結財務諸表에서는 相計除去하기 때문이다.

聯結財務諸表를 監査하는 경우 支配會社와 從屬會社間의 投資, 債權 債務 去來關係等を 調査하므로 個別財務諸表를 監査하는 경우 보다 聯結財務諸表를 監査하는 것이 實効性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課稅의 適正化

本來 支配從屬會社間의 去來는 本支店間의 去來와 同一한 것인데도 不拘하고 支配會社, 從屬會社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課稅所得을 算定한다면 實質的인 所得이 아닌 것에 對하여 課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한다면 聯結損益을 算出하여 이를 課稅對象으로 생각한다면 企業集團의 實質的인 課稅所得을 把握하게 되는 것이므로 課稅의 適正化를 期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3) 増田裕昭, 「經理實踐の立場から」 企業會計 27卷 11號 97頁.

V. 結 論

聯結財務諸表制度를 推進하게 된 動機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著名한 企業中에서 몇 個의 會社가 粉飾決算을 하여 支配會社의 赤字를 從屬會社에 轉嫁시킴으로써 下請企業이 連鎖倒産으로 社會不安을 招來하게 한 데 있다.²¹⁾ 다시 말하면 支配會社의 決算에서는 黑字를 計上하여 配當을 繼續하면서 從屬會社에서는 大幅的인 赤字를 나타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支配從屬會社間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면 支配從屬會社間의 損益을 通算하므로 支配會社의 實體를 明確하게 把握할 수 가 있는 것이다.

財務諸表規則에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와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게 하고 從屬會社의 範圍基準을 「發行株式總數(議決權없는 株式除外)의 過半數의 株式所有」라고 規定하여 「議決權의 過半數所有」라는 表現을 하지 않고 있다. 議決權株式의 過半數所有라 함은 從屬會社가 될 수 있는 것은 株式會社에 限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有限會社 合資會社等의 從屬會社도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會社는 外部로부터 出資를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므로 支配會社인 會社가 이들의 有限會社, 合資會社의 資本金의 過半數를 出資한다면 議決權의 過半數를 所有하게 됨으로써 支配從屬의 關係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從屬會社의 範圍基準을 「議決權의 過半數所有」라고 表現하는 것이 現實에 妥當한 方法이라고 생각 한다.

